

2003. 9.

군산↔서울 항공노선 재취항에 따른
손실보전금지원동의(안)

김 제 시

군산↔서울 민항기 재취항에 따른 손실보전금지원동의(안)

의안	2003-46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3. 9. .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1. 제안이유

2002년 6월 이용객 격감 및 적자경영을 이유로 폐쇄된 군산↔서울간 항공노선의 재취항을 위한 군산시의 요청에 따라 전북도에서 도청 및 군산시를 포함한 군산공항의 인근 시지역인 전주, 익산, 김제시에 손실보전금 분담을 요구함.

2. 주요골자

- 손실보전 기준은 군산↔서울간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탑승률이 70% 미만일 경우, 70%를 기준으로 그 중 30%는 항공사에서 자체부담하고 70%를 전북도와 전주, 군산, 익산 그리고 김제시에서 손실보전.
- 전북도와 4개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도 50%, 군산 20%, 전주 15%, 익산 10%이며 김제시는 5%로 탑승률이 지원 최저선인 40%일 경우 우리 시가 부담하는 손실보전금은 46백만원임.
- 항공기 재취항은 전국체전 전이며 손실금 지원은 「군산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조례」 제정 후에 시행함.

3. 참고자료

-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(항공운수사업의 조성) 제2항
- 손실보전금 분담비율 1부

군산↔서울 민항기 재취항에 따른 손실보전금지원동의(안)

□ 추진배경

- 2002. 5. 15. 수요부족, 경영여건을 이유로 군산↔서울 취항중단
(군산↔제주 노선은 대한항공에서 1일 2회 왕복 운항중)
- 2000. 10월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후 전북도 방문 외국투자자가
증가하고 있으나 항공편 부재로 불편 초래
⇒ 수도권과 빠른 교통수단으로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
- 2003년 전국체전 해외거주 선수입원 수송 (15,000여명)
- 군산시에서 2002년 12월 항공수요기초조사용역 실시후
전북도에 지원분담을 요구
(2003. 8. 19일 도에서 교통관련 국장회의 개최)

□ 항공수요 용역결과 (군산시)

- 김제시민의 항공기탑승시 군산공항이용 희망여론조사 결과
 - 군산↔제주 노선 : 65% (관내 2개여행사 표본조사)
 - 군산↔서울 노선 : 0%
- ※ 현재 군산↔제주 노선의 김제시민 탑승자 비율은 4.3%임

□ 재정지원시 연간추정액

- 지원기준 : 연간탑승율 70%미만시 차액분중 70% 전북도 부담
(도청 50%, 군산 20%, 전주 15%, 익산 10%, 김제 5%)
 - ※ 3개시(전주,익산,김제) 기본분담률3%, '03. 6월말 인구비율
적용산출
- 산출기준 : 항공기 109인승, 운임 55,000원, 1일 1왕복

○ 연간 재정지원 추정액 (최대손실보전은 탑승률40%로 한정)

(단위 : 연간탑승률, 백만원)

구분	분담률	70%	65%	60%	55%	50%	45%	40%	비 고
계	100	-	169	309	450	618	759	927	
도	50	-	85	155	225	309	380	464	
군산시	20	-	34	62	90	124	151	185	
전주시	15	-	25	46	68	93	114	139	
익산시	10	-	17	31	45	62	76	93	
김제시	5	-	8	15	22	30	38	46	

※ 연간 탑승률 추계 : 2000년도 60%, 2001년도 35%, 2002년도 25%

(2001. 9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후 탑승률 급감)

□ 타공항의 지원사례

- 양양국제공항 : 사무실임대료 및 이·착륙료 50% 감면
(월 6,300천원 정도)
- 원주국내공항 : 탑승률 70%미달시 차액분 70% 지원
(강원도 70%, 원주 25%, 횡성 5%)
- 예천국내공항 : 탑승률 70%미달시 차액분 50% 지원
(경북도 50%, 예천, 안동, 영주, 문경 50%)

□ 행정사항

- 군산↔서울 노선 재취항에 따른 손실보전 사전동의서 제출
- 손실보전 지원조례 제정

주민등록 인구 현황

[전라북도]

시군별	2003.6.30 현 제	전월 대비 (‘03.5월말)		전년도 동기 대비 (‘02.6.30)		전년도 말 대비 (‘02.12.31)	
계	1,943,788	1,943,800	△12	1,970,183	△26,395	1,953,846	△10,058
전주시	620,495	622,105	△1,610	622,358	△1,863	624,485	△3,990
군산시	269,406	270,042	△636	273,819	△4,413	272,007	△2,601
익산시	329,174	330,003	△829	332,413	△3,239	330,101	△927
정읍시	136,603	136,897	△294	142,027	△5,424	139,133	△2,530
남원시	99,609	99,765	△156	101,483	△1,874	100,392	△783
김제시	112,534	112,713	△179	112,962	△428	110,989	1,545
완주군	83,785	84,120	△335	86,017	△2,232	84,626	△841
진안군	30,328	30,442	△114	30,706	△378	30,439	△111
무주군	27,088	27,197	△109	28,599	△1,511	27,894	△806
장수군	30,877	26,224	4,653	27,220	3,657	26,349	4,528
임실군	35,005	34,942	63	36,182	△1,177	35,071	△66
순창군	31,726	31,778	△52	33,070	△1,344	32,329	△603
고창군	68,127	68,386	△259	71,389	△3,262	69,657	△1,530
부안군	69,031	69,186	△155	71,938	△2,907	70,374	△1,343

항공운송사업진흥법

[일부개정 2002.1.19 법률 제6621호]

第1條 (目的) 이 법은 航空運送事業을 振興시킴으로써 그 國際的 地位의 향상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2條 (定義)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.<개정 1991.12.14>

1. "航空運送事業"이라 함은 航空法 第2條第26號의 規定에 의한 航空運送事業을 말한다.
2. 삭제<1972.12.30>
3. "航空保險"이라 함은 旅客保險·機體保險·貨物保險·戰爭保險·第3者保險 및 乘務員保險과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保險을 말한다.

第3條 (航空運送事業의 助成) ①政府는 航空運送事業을 營爲하는 者(이하 "航空事業者"라 한다)가 航空法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財政的 支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所要資金의 一部를 補助하거나 財政資金으로 融資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2.1.19>

1. 國際航空路線의 新規開發
2. 航空機의 操縱士, 整備士 및 無線技術技士의 養成
3. 전쟁·내란·테러 등으로 인한 손실의 발생

②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항공사업자(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. 제8조에서 같다)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02.1.19>

『군산⇔서울간 항공노선 재취항에 따른』
손실보전금 분담비율

〈 법적지원근거 〉

-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 제2항 규정
 -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사업자(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. 제8조에서 같다)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<신설2002. 1. 19>

□ 항공개요

- 공 항 명 : 군산공항
- 항공노선 : 군산⇔서울간 항공노선
- 항공규모 :
 - 항 공 기 : F-100(109인승)
 - 운항횟수 : 왕복 1회/일
 - 항공요금 : 편도 55,000원

□ 도·시별 재정분담 비율

- 탑승률이 70% 미달할 경우 차액중(항공사 30%, 자치단체 70%)
- 자치단체 부담 70% 해당자치단체 배분
 - 전라북도 70% 부담액중 → 50%
 - 군산시 “ → 20%
 - 전주시 “ → 15%
 - 익산시 “ → 10%
 - 김제시 “ → 5%

※ 3개시(전주, 익산, 김제) 기본 부담율 3%, 인구비율 감안 조정

【전주·익산·김제 분담비율 산출근거】

-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수, 항공기 탑승률, 기업체수 등의 비율을 감안한 부담비율을 계획 하였으나, 서울노선이 '02. 6. 19일 폐쇄되었고 군산공항의 지역별 탑승자 파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
- 전주시의 경우 전주에 거주하며 완주군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등 지자체별 분담비율 확정에 어려움이 있어
- 현실적 대안으로 가장 최근('03. 6월말)의 인구통계 자료를 적용 함

시군명	인구수 (명)	인구 비율(%)	3개시 분담율 산출(%)		
			분담율	기본부담율	인구 비율
계	1,062,203	100	30	9	21
전주시	620,495	58.41	15	3	12.26
익산시	329,174	30.98	10	3	6.50
김제시	112,534	10.59	5	3	2.22

□ 자치단체 70%의 도·시별 재정 분담액

(단위 : 연간탑승률, 백만원)

구 분	분담율	70%	65%	60%	55%	50%	45%	40%	비고
계	100	-	169	309	450	618	759	927	
도	50	-	85	155	225	309	380	464	
군산시	20	-	34	62	90	124	151	185	
전주시	15	-	25	46	68	93	114	139	
익산시	10	-	17	31	45	62	76	93	
김제시	5	-	8	15	22	30	38	46	

< 산출근거 >

☆ 109석 탑승률 70% 시 → 76명

- 탑승률 65% : 76명-70명 = 6명 × 55,000원 × 2회 × 365일 × 0.7% = 169백만원

(탑승률 65%시 6명, 60%시 11명, 55%시 16명, 50%시 22명, 45%시 27명, 40%시 33명분의 손실보전 발생)

※ 최대 손실보전은 탑승률 40%로 한정

□ 타 지자체 지원 사례

○ 원주공항

▶ 『원주⇄제주』 노선(왕복 1회) ⇒ 대한항공

- 지원주최 : 원주시(강원도 70%, 원주시 25%, 횡성군 5%)
- 지원사항 : 탑승률 70%미달할 경우 적자중 70% 지원

○ 예천공항

▶ 『예천⇄제주』 노선(왕복 1회) ⇒ 아시아나항공

- 지원주최 : 경북도(경북도 50%, 예천·영주·문경·안동 동일 12.5%)
- 지원사항 : 탑승률 70%미달할 경우 적자중 50% 지원 최대 75천만원